		관 리 번 호	GSC-P-06
		제 정 일 자	2018.07.01
	인증표시의 사용 및 인증의 홍보	개 정 일 자	2023.11.15
		개 정 번 호	Rev.04

1. 적용범위

당 기관의 IAF MLA 가입 사실의 표기법 및 당 기관으로부터 경영시스템을 인증 받은 클라이언트가 인정 및 인증마크를 사용하는 요령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소유권 및 용어의 정의

- 2.1. 인정 마크의 소유권은 인정기관에 있으며, 인증마크 사용권은 당 기관에 있다.
- 2.2. 기관 마크: 인정 마크 및 당 기관 마크라 한다.

3. 인정 및 인증마크의 사용방법

3.1. 기관 마크의 사용 및 인증의 홍보 제한

- 3.1.1. 기관 마크는 원본을 확대·축소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크기는 최소한 가로 15mm, 세로 10mm이 되어야 한다.
- 3.1.2. 인증마크는 별첨의 원본 색상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흑백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 3.1.3. 인정 및 인증마크는 단독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 인정된 범위 및 유효기간 내에서만 사용하고, 인정범위가 취소 또는 축소되는 경우 그 취소 또는 축소된 인정범위에 대해서는 인정 및 인증마크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 3.1.4. 당 기관의 경영체제 인증서에 인정 및 인증마크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인정 마크의 의미가 혼돈되지 않도록 인증서 발행 지침[GSC-MSI-01] 10.4항에 따른 문구를 인증서 하단에 표기하여야 한다.
- 3.1.5. 인정 및 인증마크는 동시에 사용되어야 하며, 인정 및 인증마크의 혼돈을 피하기 위하여 8항. 인증마크 표시 예와 같이 인정마크를 우측 또는 하단에 위치하도록 배열함을 원칙으로 한다.
- 3.1.6. 인정 및 인증마크의 사용은 인증기관으로의 추적성을 보장하고 인증의 승인 및 그 범위가 모호하지 않도록 마크 및 문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이 마크는 제품 또는 제품 포장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기타 제품에 대한 적합성 표시로 해석될 수 있는 방식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 1) 인정 및 인증마크의 사용이 가능한 경우
 - 광고 또는 홍보물 : 산업분류상 클라이언트의 제품으로 분류되지 않은 명판, 명함 및 교육 교재, 편지지, 브로셔, 문서, 송장 등의 인쇄물, 제작물 또는 기타 광고 수단
 - 2) 인정 및 인증마크의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
 - 제품 또는 제품포장
 - 거래 샘플 또는 기타 제품 적합성에 관한 진술서


		관리 번호	GSC-P-06
		제정 일자	2018.07.01
	인증표시의 사용 및 인증의 홍보	개정 일자	2023.11.15
		개정 번호	Rev.04

- 깃발, 건물 또는 차량
- 3) 클라이언트는 시험성적서, 교정성적서 또는 검사성적서에 인증기관의 마크를 사용할 수 없다.
- 4) 제품포장은 제품을 해체하거나 파손하지 않고 제거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동반되는 정보는 (accompanying information) 분리하여 사용하거나 쉽게 떼어낼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 5) 유형 라벨(Type label)이나 식별판(identification plates)은 제품의 일부로 간주된다.
- 6) 문구는 제품, 프로세스나 서비스가 그러한 방식으로 인증 받았음을 어떤 방법으로도 암시해서는 안 된다.
- 7) 문구에는 다음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인증된 클라이언트의 식별 정보 (예: 브랜드나 회사명)
 - 경영시스템 유형 (예: 품질, 환경) 및 해당하는 표준
 - 인증서를 발행한 인증기관

[비고] 아래의 표는 어떤 제품이 인증된 경영체제 하에서 제조됨을 표시하는 마크의 사용에 관한 참고지침

마크사용 시 표기방법		마크사용 대상	제품(주1)	제품운송에 사용되는 대형박스 등(주2)	팜플렛 등
마크의 사용 (주3)	설명이 없는 경우		허용 안됨	허용 안됨	허용됨(주5)
	설명이 있는 경우(주4)		허용 안됨	허용됨(주5)	허용됨(주5)

- 주 1. 유형의 제품 자체 또는 개별 포장, 용기 등에 들어있는 제품, 시험/분석활동의 경우에는 시험/분석 보고서가 제품이 될 수 있다.
- 주 2. 이는 판지 등으로 만들어진 외부포장으로서, 최종 사용자에게는 전달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 주 3. 이는 적용 가능성에 대한 기본 설명을 포함하고 있는 특정한 형식을 갖춘 마크에 적용된다. 따라서 어휘로 이루어진 진술은 마크라고 할 수 없으며 이러한 어구는 정확하여야 하며, 오해를 야기해서는 안 된다.
- 주 4. 이는 “(이 제품 또는 회사명) (주)글로벌표준인증원로부터(품질/환경경영체제) 인증을 획득하였다”라는 명확한 진술을 지칭한다. 이 경우, 조직명(제품 또는 회사명), 경영시스템 유형 및 글로벌표준인증원의 이름이 포함되어야 한다.
- 주 5. 인증마크를 사용하는 경우, 거래 샘플 또는 기타 제품 적합성에 관한 진술서와 같은 제품의 적합성을 인증한 것으로 오해 받을 수 있는 홍보물에는 사용할 수 없다.

		관 리 번 호	GSC-P-06
		제 정 일 자	2018.07.01
	인증표시의 사용 및 인증의 홍보	개 정 일 자	2023.11.15
		개 정 번 호	Rev.04


3.2. 인증표시의 홍보 및 제한

인증기관은 계약을 통하여 인증된 클라이언트에게 다음을 요구하여야 한다.

- 1) 인터넷, 브로셔나 광고 또는 기타 문서와 같은 전달매체에 인증상태에 대한 언급 시, 인증기관의 요구 사항을 준수
- 2) 인증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진술을 하지 않거나 이를 허용하지 않음
- 3) 인증문서 또는 인증문서의 일부를 오해가 있는 방식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이를 허용하지 않음
- 4) 인증의 취소 시, 인증기관의 지시에 따라 인증사실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모든 홍보물의 사용을 중지
- 5) 인증범위가 축소되는 경우, 모든 홍보물을 수정
- 6) 경영시스템 인증에 대하여 해당 인증기관이 제품(서비스 포함) 또는 프로세스를 인증한 것으로 언급하지 않음
- 7) 클라이언트는 생산한 제품 또는 제품포장에 인증표시, 인증기관명, 인증표준, 인증번호를 사용할 수 없으며, 기타 제품에 대한 적합성 표시로 해석될 수 있는 방식의 사용을 허용하지 않음
- 8) 인증이 인증범위 이외의 활동과 사업장에 적용됨을 암시하지 않음
- 9) 인증기관과 인증 시스템의 명예를 손상시켜 공공의 신뢰를 상실하게 하는 방식으로 인증을 사용하지 않음

3.3. 인증기관은 인증상태에 대한 부정확한 언급이나, 인증문서, 마크 또는 심사보고서의 오용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소유권에 대한 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 1) 클라이언트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제 3 조의 규정』에 의한 수상·인증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 2) 인정 및 인증마크의 오용은 인증의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클라이언트가 광고, 카탈로그 등에 인증표시를 잘못 사용하고 있음을 발견하는 경우 시정조치, 인증서 회수, 정정광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클라이언트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 3) 인증을 받지 않은 기업이 인증을 받았다고 허위로 인증표시를 사용하는 경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별표] 과징금 부과기준』에 의거하여 처분되며, 이러한 경우를 적발하는 때에는 즉시 한국인정지원센터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당 기관 인증서 등에 부착되는 자체 마크의 보호를 위해 마크를 관련 당국에 등록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관 리 번 호	GSC-P-06
		제 정 일 자	2018.07.01
	인증표시의 사용 및 인증의 홍보	개 정 일 자	2023.11.15
		개 정 번 호	Rev.04

4. 사용기간

- 4.1. 인정 및 인증마크는 효력정지 및 취소의 사유가 없는 한 인증을 취득한 일자부터 계약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 4.2. 인증이 일정기간 정지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인정 및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일자부터 사용할 수 없다.

5. 사후관리

- 5.1. 인증서와 인정 및 인증마크의 사용에 대한 관리는 정기사후관리 시에 우선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 5.2. 인증서와 인정 및 인증마크의 오용방지를 위하여 당 인증기관의 심사원은 최초심사 완료 후와 사후관리 시에 본 절차서의 내용을 클라이언트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6. 마크의 사용 정지

- 6.1. 클라이언트가 인증 취소 및 효력 정지를 당하였을 경우에는 인증 취소 또는 효력 정지 기간 동안 인정 및 인증마크가 표시된 어떠한 문서도 사용 또는 배포를 금한다.


7. IAF MLA 마크 사용과 가입 사실 표기

7.1. IAF MLA 마크 사용기준

- 1) IAF MLA 마크는 해당 한국인정지원센터 마크와 함께 사용하여야 하며, IAF MLA 마크만을 단독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 2) 클라이언트는 IAF MLA 마크를 사용할 수 없다.
- 3) IAF MLA 마크는 인증서, 기안지, 견적서, 광고물 또는 홈페이지에 사용할 수 있으나, 제품에 표시하거나 제품과 관련해서는 사용할 수 없다.
- 4) 당 기관은 경영시스템의 인증업무에 대해서 IAF 가 책임을 진다는 의미로 IAF MLA 마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 5) 한국인정지원센터가 IAF MLA 마크 사용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당 인증기관도 IAF MLA 마크의 사용을 중지한다.
- 6) IAF MLA 마크 사용 시 반드시 한국인정지원센터의 인정번호를 함께 표기하여야 한다.
- 7) IAF MLA 마크를 사용하기 전 한국인정지원센터와 IAF MLA 마크 사용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7.2. IAF MLA 가입 사실 표시

- 1) IAF MLA 가입 사실 표시는 당 기관이 발행하는 인증서에 사용할 수 있다. (8 항(3)참조)

 GSC 글로벌표준인증원	인증표시의 사용 및 인증의 홍보	관리 번호	GSC-P-06
		제정 일자	2018.07.01
		개정 일자	2023.11.15
		개정 번호	Rev.04

2) 한국인정지원센터의 IAF MLA 가입 사실이 소멸되는 경우 당 기관도 IAF MLA 가입 사실 표시를 중지하여야 한다.

8. 인증마크 표시

8.1. 좌우 대칭인 경우



8.2. 상하 대칭인 경우



8.3. IAF MLA 가입표기

